

독점에서 공유로

1. 기술과 지식의 생산 방식

- 코로나19가 공공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면, 보건 기술(health technology)과 관련해서는 공동 개발, 협력,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가 위기 극복 모델로 등장. → 위기에만 작동하는 예외적인 모델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로, 구조에 상주하는 모델로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
- 기술·지식의 생산은 경쟁에서 이긴 자가 성과를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방식, 혁신 주도 경제 성장(혁신 주체에게 더 많은 보상), 성과를 독차지할 수 있는 시장독점권은 특허권, 자료독점권과 같은 법적 권리로 보장.
- 문제점: 소외 질병(neglected diseases),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코로나 19 사례 (이탈리아 인공호흡기용 밸브 3D 프린팅 제작, 의료용 N-95 마스크와 3M의 특허)
- 커먼즈 방식의 생산 모델: 수평적 관계의 기여자들이 “개방형 기여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참여적인 실천을 통해 공동의 작업을 관리하며, 공유된 자원을 생산” (Elinor Ostrom의 Knowledge Commons, Stiglitz의 Pool of Knowledge, 베토벤의 예술 창고(warehouse of artworks))

2.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공유

-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술·지식 공동관리 창고(pool)
 -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관리
 - 권리는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19의 진단, 예방, 통제 및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말함. 치료제 특허는 물론 디자인, 임상시험 성적 자료(자료 독점권), 노하우, 셀라인, 저작권, 진단 기기나 장비, 의약,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청사진(blueprint)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
 - WHO 회원국,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과 양해각서부터 체결, 구체적인 이용허락 조건은 나중에 결정.
 - 유럽연합의 WHA73 결의문 초안: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진단제, 치료제, 백신을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개발·시

협·생산하고, 코로나19 관련 의료적 개입에 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자발적으로 공동관리에 맡기는 방식을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OP4.2)

- 네덜란드 정부, 투자사(아흐메아 Achmea)
- 영국 의원 130명의 서한
- Access to COVID-19 Tools (act) Accelerator (24 April 2020) A Global Collaboration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Equitable Access to New COVID-19 diagnostics, therapeutics and vaccines
- Open COVID Pledge
 - 2020년 3월 31일 출범, Creative Commons, Standford Law School, PIJIP (American University), Mozilla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종식과 질병의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모든 특허, 저작권 및 기타 지재권의 이용허락
 - 이용방식은 특허법과 저작권법이 명시한 독점 행위 전부(생산, 제조, 판매, 수입, 복제, 번역, 배포, 공연, 전시, 수정,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 이용허락의 범위: 비독점적, 무상, 지역 제한없음, 재이용허락권 없음.
 - 기간: 2019년 12월 1일부터 WHO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종식 선언 1년 후까지.
 - 인텔, 페이스북, 아마존, IBM, 휴렛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 COVID-19 Technology Access Framework
 - 4월 7일, Standfo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MIT
 - 코로나19 예방, 진단, 치료에 필요한 기술의 이용과 기술이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비독점적 무상 이용허락(non-exclusive royalty-free license)
- 이스라엘: 2020. 3. 18.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 칼레트라 (정부사용) 강제실시.
- 캐나다: 코로나19 대응 특별법
 - 특허발명의 정부사용 규정 보강
 - 최장 1년 한시법(2020. 9. 30.~2021. 9. 30.)
- 독일,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3. 우리의 현실과 과제

- 코로나19 관련 공공연구(보건복지부 2020. 4. 2. 보도자료 “신종감염병 및 필수 예방접종 백신 개발을 위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연구단계 전주기

에 걸쳐 10년간 2,151억원 지원”,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 백신, 진단 및 임상연구를 위한 긴급 현안 과제 12개 공모,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긴급 과제공고)

- 지식재산기본법
- 주식회사 특허청 - 책임운영기관법
- 베이돌법의 생태계 교란 - 기술이전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국연사규정(대통령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부처가 ‘보건복지부’인 특허출원 전체 4,995건(출원일: 2010. 1. 4.~2020. 4. 9.)

대한민국 단독	질병관리본부장	76 (1.52%)
	국립재활원장	44 (0.88%)
	보건복지부장관	1 (0.02%)
	계	122 (2.44%)
대한민국, 민간 공동		40 (0.80%)
민간 단독		4,833 (96.76%)
합계		4,995 (100.00%)

/끝/